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합776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19. 4. 17.

판결 선고 2019.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124,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07. 1. 19.자 대출금 채무 및 LC 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24.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최고액 2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4. 8.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3.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7. 10.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54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011,28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면서 신청원인 중 하나로 '원고가 C에 대한 2007. 1. 19.자 대출금 채무 및 LC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C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 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차 가지게 될 구상금(이하 '이 사건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기시인된 640,845,434원 외에 114,434,56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원금 256,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자인 C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시인하였고, 따라서 위 금액을 추가로 원고에 대한 채무로 시인하는 경우 중복시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원고의 회생채권에서 제외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2014.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8. C에게 258,124,734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9. C에게 '원고가 258,124,73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수계신청을 하였는데, C은 2015. 6. 18. 회생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고, 또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 258,124,734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제118조),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제148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7.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재판상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자연채무의 소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중복시인의 문제가 있어 회생채권에서 제외된점,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수계신청을 요청하였는 데 C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이삼윤, 판사 윤정운